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19 (04308) 가정행복국 Tel 02-3271-0486, Fax 02-3271-0509

문서번호: 세가한본 제2026-146호(가정행복-18)

수 신: 신한국 교구장, 부교구장, 대교회장, 교회장, 청년전도사

참 조: 교구 사무장

발 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행복국

발 신 일: 천일국 14년 천력 5월 17일(2026년 7월 1일)

제 목: 신한국 천보등재 기준 변경 안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지난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 홀리마더한의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에 실제적으로 안착하시어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시대가 열렸으며, 섭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섭리적 변화와 더불어 신종족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여 하늘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천보가정이 되기 위한 천보등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천보등재를 준비하는 축복가정이 착오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신한국 천보등재 기준 변경에 대한 배경 (천보등재 및 천보가정의 본질적 의미)

가. 축복가정의 인생 목적: 천지인참부모님께 받은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보등재의 노정을 통해 신종족메시아 사명 완수를 평생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3대 축복 완성과 천일국 확장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다.

나. 신종족메시아 사명 완수

- 1) 종적 사명(조상 구원): 430대 조상 해원 및 축복을 통해 영육계의 모든 사람을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복귀시키기 위한 참부모님의 성업에 동참하고 영계 기반을 조성
- 2) 횡적 사명(종족 구원): 430가정 종족 축복으로 내 이웃과 종족을 하늘의 자녀로 인도하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

다. 천보가정의 의미: 위 종횡의 사명을 완수하고 천보원에 등재됨으로써, '하늘의 보물'이 된 가정

라. 천보등재 이후 천보가정의 삶: 천보가정교회를 통한 천일국 확장

- 1) 천보가정교회 운영: 천보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 가정교회 운영
- 2) 천일국 확장: 천보가정교회를 통해서 전도, 양육, 축복의 역할 담당

2. 천보등재 기준 변경 방향

가. 수(數)에서 질(質)로의 변화

나. 조건에서 실제로 변환

다. 서약에서 실천으로 확립

3. 천보등재 기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종적	8줄기 430대 조상축복 완료	기존과 동일	HJ천주천보수련원 ‘확인서’ 발급
횡적	1. 3대권 축복 430가정 완료 2. 입회원서 및 입회비 완납 3. 축복서류 및 축복비 납부	1. 미혼 1가정과 기성 3가정 이상 축복 완료 2. 430가정 축복완수 서약서 제출 (전체 믿음의 종족 대상)	신한국협회 ‘확인서’ 발급

4. 천보등재 횡적 기준 세부 내용

가. 표준 기준: 미혼축복 1가정 및 기성축복 3가정 이상 축복 봉헌

- 1) 미혼축복가정은 축복 받은 직계 자녀 및 1세 믿음의 자녀 포함.
- 2) 기성축복가정 요건: 기성축복 감사헌금(100만원) 완납, 참부모님 주관 축복식 현장 참석, 가정출발의식(탕감봉 의식, 40일 성별, 목회자 축도, 3일 행사 등) 완료한 가정
- 3) 각 가정은 기준 심사 시점에 부부 중 한 명 이상 정기적 예배와 헌금 생활 유지(3개월 간 예배 2회, 헌금 1회 이상)

나. 확대 기준

구분	미혼축복가정	기성축복가정	비고
표준	1가정	3가정	
기성축복가정 중심	없음	5가정	기성 2가정을 미혼 1가정으로 인정
미혼 및 기성축복가정	2가정	1가정	미혼 1가정을 기성 2가정으로 인정
미혼축복가정 중심	3가정	없음	상동

다. 430가정 축복완수 서약서 제출

- 1) 믿음의 종족권(직계, 믿음의 종족 전체)으로 '축복 430가정 완수 서약서' 제출
- 2) 3대권을 넘어 전체 믿음의 계보를 통합함. (기존에는 430가정 기준에서 3대권만 인정하여 믿음의 증손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보완하여 믿음의 증손자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종족을 430가정으로 편성함.)

라. 각종 확인서 제출 및 발급처

- 1) 430가정 축복완수 서약서 제출처: 신한국협회 가정행복국
- 2) 횡적 기준 완료 확인서 발급처: 신한국협회 가정행복국
- 3) 믿음의 자녀 입회원서 및 축복 감사헌금 봉헌 확인서: 신한국협회 총무국

※ 확인서 발급 업무는 추후 신규 천보등재 심사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타 행정 사항

- 가. 향후 입회원서 및 축복서류 작성 시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 나. 참부모님께서 주신 430가정 종족 축복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천보가정은 3대권을 넘어서 모든 대수로 확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변경된 기준안은 2026년 6월에 공지하고, 2027년 천보등재식(예정)을 목표로 진행하여 가정들이 준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할 예정임.

※ 2026년 신규 천보등재 심사는 진행되지 않음 (추후 변동 사항 발생 시 공문으로 안내 예정)

- 라. 기준안 변경 이전에 준비하던 가정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 대응 예정임.

6. 문의: 가정행복국 한우민 대리(02-3271-0486)

첨부: 축복헌금 미납 기성가정 인정 기준.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협회장 송 용



첨부: 축복헌금 미납 기성가정 인정 기준

구분	내용
기준	축복헌금 미납 기성가정(기존 기성가정) 50가정을 축복헌금 완료 기성가정(신규 기성가정) 1가정으로 인정
완료기준	1. 기존 기성가정 200가정 이상을 신규 기성가정 4가정으로 인정함. 2. <u>신규 미혼 또는 기성가정 1가정</u> 은 필히 배출해야 함.
기존 기성가정 실적에 따른 신규 기성가정 인정	■50가정 미만 : 신규 기성가정 인정하지 않음 ■50가정 ~ 100가정 미만 : 신규 기성가정 <u>1가정</u> 인정 ■100가정 ~ 150가정 미만 : 신규 기성가정 <u>2가정</u> 인정 ■150가정 ~ 200가정 미만 : 신규 기성가정 <u>3가정</u> 인정 ■200가정 이상 가정 : 신규 기성가정 <u>4가정</u> 인정